



동작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청사 건립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구청장 방침 제69호(2015. 3. 9)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행』과 관련입니다.

2. 동작구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관련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구청사 건립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결정(안)』이 “원안의결” 됨에 따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제한지역 : 상도동 176-1번지 외 31필지(구청사 건립 예정부지) 13,491㎡

나. 제한사유 :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과 관련 동작구청사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원활한 행정타운 건립사업 추진

다. 제한대상 행위 : 건축허가, 신고, 변경 등

라.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경우 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주무관 **이원근** 지구계획팀장 **김용태** 도시계획과장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07/15
최인수

협조자 주무관 **김경문** 행정타운건설추진단 **최낙현** 장

시행 도시계획과-102340 () 접수 ()

우 156-75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74 (대방동) / www.dongjak.go.kr

전화 02-820-9734 /전송 02-820-9798 / / 대시민공개